

#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장시간노동 차별’ 유예 하자는 정부, 노동자 건강·안전 외면해”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2.12.26 17:27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30분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주 60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게하는 '장시간노동 차별'을 지속시키려는 움직임에 민주노총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유예기간을 끝내고 2023년부터 사라져야(일몰)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 사용자 단체가 이 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노총이 장시간노동체제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30분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이 자리에 참석했다.

정부와 올해로 끝나는 30인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 허용 특별연장근로를 2024년까지 연장하려는 입장이다. 경제위기로부터 비롯된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과 야당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가재정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의 일몰 법안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안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개정이후 오늘에 이르는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아무런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2023년 우리 사회에 닥칠 경제 및 제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방비로 노출되며 안전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해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일몰제 연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힌 뒤 “여당 국민의힘은 경영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일몰제 연장 입장을 철회해야 하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정대로 일몰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0시 30분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52시간상한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맞게 주40시간노동제 실현이라며, 30인미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지원과 생활임금보장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30인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상한제 적용제외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를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60시간노동이 가능케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정부는 주52시간상한제 자체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 시간 관리단위를 주단위에서 월, 연간단위로 바꿔 주당 69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개혁'을 권고했으며 노동부는 이른 시일안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댔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격차해소를 위해 5인미만사업장, 단시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며 낡은 노사관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조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사장의 교섭의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교섭범위의 확대, 사용자의 노조탄압수단으로 남용되는 손배가압류의 제한을 포함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해당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노조법23조개정 운동본부와 노조법 2조·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부자감세와 복지후퇴를 막지 못한 국회가 또다시 30인미만사업장의 장시간노동체제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60시간 특별연장근로제의 일몰연장논의를 중단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mailto:nojojogirl@gmail.com)